이 보도자료는 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고, 공개되는 범죄사실은 재판에 의하여 확정된 사실이 아님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검찰 PROSECUTION SERVIC

창원지방검찰청 통영지청

전문공보담당자 부장검사 배철성

전화 055-640-4324 / 팩스 055-640-4643

보 도 자 료

2022. 7. 18.(월)

제 목	불송치결정 된 2억 3,000만 원 상당의 사기 등 사건을 검찰에서 직접 수사하여 구속 기소

공소제기 후 공개의 요건 및 범위

☑ 피고인, 죄명, 공소사실 요지, 공소제기 일시, 공소제기 방식, 수사경위, 수사상황 등 (제11조 제1항)

- 창원지방검찰청 통영지청 형사1부(부장검사 노정옥)는 **경찰이 불송치결정**한 사건을 **직접 보완수사**하여, 7. 15.(금) 피고인을 **사기죄, 공전자기록등 불실기재죄 등**으로 **구속 기소**하였음
- 피고인은 4년간 사귄 피해자에게 해외투자금 및 아들의 어업후계자 지정에 필요하다고 거짓말하여 **2억 3000만 원 상당의 현금과 어선** 등을 교부받고, 피해자 명의 위임장을 위조하여 **1억 원 상당의 근저당권**을 불법적으로 말소하였음
- 검찰은 카드사용내역, 계좌거래내역, 승선명부 분석 등을 통해 근저당권 말소 경위를 밝히고, **피고인이 재산을 은닉하고 해외도주**하려는 정황 등을 확인 후 구속하였음
- 통영지청은 억울한 범죄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국민의 기본권 보호라는 검찰 본연의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겠음

Ⅰ 피고인 및 공소사실 요지

- 피고인 A○○ (60세, 구속)
- ’20. 1. ~ ’20. 3.경 4년간 사귄 피해자에게 해외투자금 및 아들의 어업후

계자 지정에 필요하다고 거짓말하여 2억 3,000만 원 상당의 현금과 어선 등을 교부받으면서 자신의 부동산에 1억 원 상당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으나, 6일 뒤 피해자 명의의 위임장을 위조 후 근저당권을 불법말소하여 **사기,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,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동행사**

Ⅱ 수사 경과

- ’21. 5. 3. 경찰, 피고인의 사기 등 범행 **불송치결정**
- ’21. 6. 9. 검찰, 사건 검토 중 이의신청 있어 **보완수사요구**
- ’22. 2. 9. 경찰, 혐의없다는 의견으로 **사건 재송치**
- ’22. 2. ~ 6. 검찰, 계좌영장·주거지압수수색 등 **직접 보완수사**
- ’22. 7. 15. 검찰, A○○ **직접 구속기소**

Ⅲ 수사 의의 및 향후 계획

- 경찰은 핵심쟁점인 피해자가 근저당권말소 당일 법무사 사무실을 방문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할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는 등의 이유로 불송치 결정을 하였음
- 검찰의 직접 수사과정에서 카드사용내역 확보, 통신기지국위치, 승선명부 분석 등을 통해 **피해자가 근저당권말소 당일 법무사 사무실을 방문하지 않은 점을 확인함**

  - 또한 계좌거래내역, 등기부등본, 통화녹음을 확인하여 피고인이 결별을 계획하고 **부동산·어선을 처분하여 현금화한 후 은닉하고 해외로 도주하려고 한 사실**을 밝혀 **피고인을 구속 기소**함으로써 법과 원칙에 따라 사법정의를 실현하였음
- 검찰은 철저한 공소유지를 통해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최선을 다하고, 향후 **피해자의 억울한 사정에도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국민의 기본권 보호라는 검찰 본연의 업무를 충실히** 수행하겠음